#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2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최수진・임이자・김예지

강선영 • 인요한 • 조정훈

김선교 • 박준태 • 김장겸

김상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 법률 제 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출연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연금"을 "출연금·보조금·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연금"을 "출연금·보조금"으로, "관리와"를 "관리, 융자의 대상·기준·상환과"로 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2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u>・보조금・융자금</u>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	3
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	출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
	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u>출연금</u> 을 받	④ <u>출연금·보조</u>
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u>금·융자금</u>
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	
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	
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u>출연금</u> 의 지	⑥ <u>출연금·보조</u>
급·사용 및 <u>관리와</u> 제4항 및	<u> 금</u> 관리, 융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의 대상ㆍ기준ㆍ상환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